

IMO 제15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FSI)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15차 기국협약준수 전문위원회(15th Session of Subcommittee on Flat State Implementation)
- 기간/장소 : '07. 4. 30~5. 4 (5일간)
Royal Horticultural Hall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강길보 주임검사원

II. 의제 목차

1. 의제의 채택
2. 다른 IMO 회의의 결정사항
3. 기국 준수의 촉구 방안과 정부의 책임
4. MARPOL 73/78에 따른 강제보고
5. 수용시설 및 관련 의제에 대한 검토
6. 해양사고의 통계 및 조사
7. 해양사고 조사 코드에 대한 검토
8. 항만국 통제(PSC)에 관한 조화
9. 2004 벨러스트수 관리 협약(BWM Con-

- vention)에 따른 항만국 통제 지침의 개발
- 10. 선원의 작업시간에 관한 항만국통제 지침
- 11. IMO 규정 이행상 문제점 종합 분석
- 12. HSSC에 따른 Survey Guideline(Res. A.948(23))의 검토
- 13. IACS 통일해석(Unified Interpretations)에 대한 검토
- 14. IUU(불법, 미규제, 미보고) 어업에 관한 사항 및 Res. A.925(22)의 시행에 대한 검토
- 15. 차기 회의(FSI 16)의 작업계획 및 의제
- 16. 2008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17. 기타사항(Any other business)
- 18. 위원회에 보고(Report to the Committee)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2	타 기구의 결정사항
------	------------

- 전문위원회는 MEPC 55, MSC 82, FAL 33, NAV 52, SLF 49, DSC 11, STW 38, FP 51, COMSAR 11, DE 50, FAL 34, BLG 11 및 SLF 50의 결정사항에 대항 주

목하고, 관련의제 논의시 동 사항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

의제 3 기국준수의 촉구방안 및 정부의 책임

□ 회의결과

- FSI 15/3 (안전관리시스템 심사원에 대한 ISM Model course 제안,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에서 제안한 안전관리시스템 (ISM) 심사원 양성과정 IMO Model Course 제정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에서는 의제문서에 제안된 Model Cours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있음
 - * IMO Model Course 제정에 동의(베네수엘라, 페루, 나이지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나마, 우루과이 및 바하마)
 - * ISM 심사원 양성 교육의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해당 제안은 강제 규정(Binding)이 아닌 자발적인 권고사항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언급함 (미국, 마셜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리제 및 사이프러스)
 - 아국에서는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된 Model Course가 심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각국의 실정에 따라 교육 요건은 상이할 수 있어 자발적인 권고사항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상기와 같은 회원국 의견을 바탕으로, 본회의 의장은 IMO Model Course에 대한 제안을 MSC 83차에 제출하고, MSC

- Validation group에 최종 검토를 요청함
- FSI 15/3/3 (해양사고 분석 자료와 유럽 항만국통제 점검자료 사이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비교, 터키)
 - FSI 15/3/1 (해양사고 분석자료와 항만국통제 점검자료 사이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비교, 뉴질랜드)
 - 국가별 선박의 위험성 평가기준은 개별 선박의 출항정지율(Ship's Detention rate)에 따르고 있으나, 터키는 출항정지율에 부가하여 해양사고율, 선주 이력 등이 포함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는 터키의 제안에 찬성하나, 통합방법론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서(FSI 15/3/1)를 제출하였음
 - * 선박의 출항정지율에 해당 기국 선박의 전체 해양사고율을 통합하는 통합방법론에 반대하며, 해양사고율과 개별선박의 상관관계 등 규명 필요함
 - 이에 대하여, 아국에서는 본회의 논의에 앞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사전 접촉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하기 하였음
 - * 전 세계적으로 해양사고 통계자료의 기준, 정확한 통계자료의 이용 가능, 통합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함
 - 이에 따라, 일본의 최초 발언에 이어 아국에서 발언하고 러시아의 발언이 있었으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중국, Paris-MoU, Tokyo MoU 등의 지지를 받았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터키의 제안은 흥미

- 로우나, 통합방법론에 대해서는 반대함
- IMO 해사안전국장은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 등 통합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세계 해사대학(WMU)와 같은 제3의 연구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대다수의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음
- 본회의 의장은 초안작업반을 구성, 통신작업반의 작업범위를 선정하고 통신작업반의 검토 보고서를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토록 함
 - ⇒ 통신작업반의 작업범위는 PSC Target criteria에 해양사고 통계자료의 통합 필요성 및 이용 가능성 확인, 학술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기관 추천 등 검토 결과를 FSI 16차에 보고토록 함
- FSI 15/3/4 (강제협약이행 코드(Res. A.973(24))의 개정, 대한민국)
 -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 제도(IMO Member states Audit Scheme)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제협약이행코드(Res. A.973(24))가 '05년 채택 이후 제·개정된 협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감사 기준으로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국에서 지적하고, 해당 코드의 개정을 제안하였음
 - 전문위원회는 아국의 제안에 대하여, '07년말 까지 채택되는 협약에 한하여 개정 강제협약이행코드에 반영하기로 결정함
 - 작업반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Assembly Resolution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MEPC 56 및 MSC 83에 최종 검토를 요청하였음

- 또한, '07.말까지 수락(Accept)되지 않은 협약과 관련하여 각 주관청 의무사항을 표시(아국 제안사항 중 최종안에서 삭제된 내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문서로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의제 4 | MARPOL 73/78에 따른 강제보고

□ 회의결과

- FSI 15/4 (MARPOL 73/78에 따른 강제 보고서 분석 및 평가)
 - 2005년 MARPOL 73/78 협약 당사국 30개국 및 준회원 1개국에서 보고한 강제보고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낮은 보고율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음
 - * 차기 회의부터는 보고 기한이 지난 회원국의 정보도 같이 제출하기로 결정함
 - * MEPC/Circ.318, 보고양식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FSI 16차에 각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함
 - 또한, 사무국에 MARPOL 협약에 따른 보고 의무 이행에 관한 FSI 15/4에 대한 최신 화 된 자료를 다음 회기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의제 5 | 항내 수용 시설

□ 회의결과

- FSI 15/5/1 (PRFD의 관찰(Monitoring)/평가(Evaluation)/수정(Adjustment)에

- 관한 Action Plan 작업 내용 2.1항 논의)
- 사무국에서 GISIS상 항내 수용 시설 데이터베이스(PRFD, Port Reception Facilities Database) Module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PRFD의 효과적인 사용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온 항내 수용 시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 그러나 현재 PRFD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본회의 장에서는 PRFD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 회원국에 PRFD 상의 정보 입력을 촉구하였음

- FSI 15/5, FSI 15/5/2, FSI 15/5/3 (항내 수용 시설 관련 Action Plan 진행 방향 논의)
- 본회의장에서 항내수용시설 관련 Action Plan이 MEPC 55차 승인되었음을 소개하였으며, Action Plan 중 2008년을 논의 완료 기한으로 하는 다음 사항 및 FSI 15/5/2, FSI 15/5/3 관련사항을 통신작업반을 설립하여 상세 내용을 검토하고, 차기 FSI 16차에서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함

[통신작업반 작업범위]

- (1) 표준 사전 보고 양식 개발 - 표준화된 사전 보고 양식(Advanced Notification Form) 및 표준화된 폐기물 운반 통지 양식(Waste Delivery Notification Form)
- (2) PRFD의 관찰/평가/수정
- (3) 항내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율 향상

- (4) 폐기물 운송에 있어 선박과 항만 시설 사이에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 파악
- (5) 폐기물 분류 요건 및 포함 내용 식별 (identification)에 관한 사항 표준화
- (6) 선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에 대한 검토
- (7) 항내 수용 시설의 수용 능력 및 형태에 대한 검토
- (8) 수용 시설의 지역별 배치 확립에 관한 지침 개발
- (9) 항내 수용 시설의 바람직한 이용(Good practice)에 관한 지침 개발

의제 6 해양사고 통계 및 조사

□ 회의결과

- FSI 15/6, FSI 15/6/1 (해양사고 분석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및 사고조사 보고서 목록)
- 각 회원국이 제출한 총 51건의 해양사고에 대해 통신작업반(아국포함 16개 회원국)에서 수행한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작업반에서는 선원에게 공개될 해양사고에 대한 교훈사례에 대해 FSI 16차 회의에서 검토기로 결정하고 해양사고 조사시 인적과실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각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하였음
- “Chassiron, Panama Serena, Bow Mariner” 선박 해양사고 보고서를 MSC

- 위원회에 제출 및 관련 IMO 회의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배포를 결정함
- SLF 49차에서 제안한 IMO damaged cards에 관하여 FSI 16차에서 검토하기로 함
- FSI 16차 회기간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함
- 싱가포르 “Cougar Ace”에 대한 해양사고 정보(FSI 15/6/2)
 - 2006. 7. 24 알라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Cougar Ace”에 대한 싱가포르의 사고조사 요약 보고서임을 사무국에서 설명
 - 각국에서는 싱가포르의 해양사고보고서에 대해 좋은 사례임을 치하함

의제 7 | 해양사고조사 코드에 대한 검토

□ 회의결과

- 해양사고 조사 코드에 대한 통신작업반의 보고서로서 동 코드의 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의제 6을 포함한 작업반(W/G 1)을 구성함

□ W.G 1 작업반 회의결과

- Code 명칭의 수정
 “Code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 Safety Investigation into a Marine Casualty or Marine Incident”
- 해양사고조사코드를 SOLAS 제11-1장에 추가, 강제화 하기 위하여 MSC 83차(07.

- 10)에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차 후 MSC 84차에서 채택을 논의토록 동의함
- 계선 중 사고(Mooring Accidents)와 관련한 안전성 연구에 대한 정보(FSI 15/7/3)
 - 덴마크 대표단은 동 문서에 대하여 국제선에서 발생한 계선사고(Mooring accidents)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임을 소개함
 - 각국에서는 덴마크 당국의 해양사고보고서가 해양사고 예방에 좋은 사례가 될 것임을 치하함

의제 8 | 항만국통제 활동에 관한 조화

□ 회의결과

- 항만국통제(PSC) 활동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코드(의제문서 8/6)
 - Paris MoU에서 사용 중인 CODE OF GOOD PRACTICE를 일부 수정작업을 거쳐 2006년에 Tokyo MoU 및 Baltic MoU에서 채택하였음을 소개
 - 타 지역협력체에서도 동 코드를 참고로 하여 각 지역별 Code of Good practice를 채택하여 줄 것을 피력함
 - 이에 대해 Tokyo MoU에서는 2006년에 Code of Good practice을 채택하였음을 발언하며 Paris MoU을 지지하였으며, Vina del ma 및 지중해 MoU에서는 동 사항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DG 2 구성〉
 - 본회의 의장은 DG 2에서 항만국통제관을 위한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코드에 대한 MSC - MEPC .4 Circular 초안문서

- 를 개발하고 2007. 6. 7(목)일까지 본회의장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DG 2 참가국 : 호주, 바하마, 폴란드, 중국, 러시아, 영국 등 10개국)
- DG 2 의장(영국 Mr. P.Dolly)은 참가국들의 의견을 들어 회람문서를 초안을 개발하여 본회의장에 제출함
- <본회의장 결정사항>
- DG 2 보고서(WP 6)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 MSC/MEPC에 제출하기로 함
- 사이프러스 국적선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기국통제(FSC) 강화 방안 (의제문서 8/2)
- 사이프러스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요청에 따라 사이프러스는 자국 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해 강력한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결과 '05년 Paris MoU, Tokyo MoU에서 White list로 진입하였으며, 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시행방안을 소개함
- 이에 대하여, 각 국은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회원국의 대부분은 선박의 출항정지율 저감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정보공유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피력함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그리스, 볼리비아, 대한민국, 파나마, 몰타, 마셜아일랜드, 스웨덴)
- 특히, 몰타는 사이프러스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보공유를 통해 강제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반면에 스웨덴은 강제사항이 아닌 정보공유를 위한 회람문서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러시아는 사이프러스의 조치로 인한 Paris MoU, Tokyo MoU에서 White 국가로 진입하였으나 사이프러스 국적 선박의 안전성 및 승선원들의 안전성의 향상에는 의문을 제기함
- 이에 대하여, 사이프러스는 러시아의 발언내용에 대해 사이프러스의 안전 성취도를 평가받기 위해 자발적인 회원국 감사제도를 수감할 것임을 회원국에 알림
- <본회의장 결정사항>
- 본회의장에서 의장은 사이프러스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며, 각 회원국에서는 FSI 16차에 각 회원국의 사례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함

의제 9	2004 벨러스트수 관리 협약(BWM Convention)에 따른 항만국 통제 지침의 개발
------	--

□ 회의결과

- 동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는 없었으며, Paris-MoU에서 2008년까지 BWM 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 지침을 제출예정임을 상기함
- 의장은 Paris-MoU에서 관련점검 지침을 개발 중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FSI 16차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의제 10	선원의 근무 시간에 관한 항만국통제
-------	---------------------

□ 회의결과

- 동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 없었으

며, 일본, 네덜란드, 그리스, 마셜아일랜드 등 각 회원국에서는 동 사항이 STW에서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제안하였으며, 전문위원회는 STW 39 논의결과가 나온 이후 FSI 16차에서 검토하기로 함

- 선원의 근무 시간에 관한 항만국통제 지침 개발과 관련하여, 일본은 ILO 협약에 따라 현재 ILO에서 개발되고 있는 PSC 지침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ILO에서 IMO에 지침에 대한 전문 의견을 요청하였음을 피력함
 - 이에 대해 Paris MoU에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음을 사무국에서 설명하고 ILO는 일본의 발언에 공감을 표함
- 의장은 동 의제에 대해 FSI 16차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MSC, MEPC에 목표완료일을 2009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의제 12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 948(23))의 검토
-------	-------------------------------------

□ 회의결과

- FSI 15/12, FSI 15/12/Add.1, FSI 15/12/Add.2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의 검토에 대한 통신작업반 보고서)
 - 각 주관청에서 선박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인 검사 절차 및 범위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는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에 대해, 통신작업반(CG)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작업반이 설립되어 개정 내용을 최종 검토하고 지침 개정에

관한 Assembly Resolution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MEPC 56 및 MSC에 최종 검토를 위하여 제출됨

- 아국은 통신작업반 작업 내용 중 협약 개정 이력 문구 단순화와 관련하여, 이력 문구 단순화에는 동의하나 앞으로의 개정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도록 제·개정 협약의 범위를 요약한 부록을 검사 지침 추록으로 부가할 것을 작업반(WG 2)에서 검토해 줄 것을 본회의장에서 제안하였음
 - 아국의 제안사항은 작업반에서 검토되어, 검사 지침 부록으로 추가되었음
- FSI 15/12/2 (AIS 장비에 대한 검사 및 test report)
 - 아국은 HSSC에 따른 검사 지침(Res. A.948(23))과 관련한 통신작업반 보고서에 대해, AIS 검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AIS의 검사 지침 및 AIS test report를 MSC Circular로 발행 할 것을 제안하였음
 - AIS에 대한 아국의 제안 사항은 작업반 논의를 거쳐, 검사 지침 개정에 관한 Assembly Resolution 초안에 반영됨
 - 또한 AIS test report 관련 사항은 작업반에서 MSC Circular 초안이 작성되어, MSC 83에 최종 채택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 마지막으로 FSI 15/12/2에 아국이 언급한 AIS 관련 SOLAS 개정 제안 문서를 MSC 83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FSI 15/12/3 (여객선 선저 외판의 수중 검사에 관한 지침)
 - 미국 및 파나마에서 여객선의 선저 외판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주기 및 검사 방법 (입거검사 또는 수중검사)에 대한 통일된 적용 지침을 제정하기 위하여 HSSC에 따른 검사지침의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본회의장 및 작업반(WG 2)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음
- FSI 15/12/4 (통신작업반 보고서에 대한 Comments)
 - IADC에서는 본 문서를 통하여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에 MODU 코드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사항 및 MARPOL 관련 기국의 MODU 검사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적절한 지침을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음
 - IADC 제안에 대하여 HSSC에 따른 검사 지침에 MODU 코드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나, MODU 코드가 현재 개정 중이므로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또한 MARPOL 관련 기국의 MODU 검사 관련 사항은 이미 MEPC에서 논의되었으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음

의제 14	IUU(불법, 미규제, 미보고) 어업에 관한 사항 및 결의문 A.925(22)의 시행에 대한 검토
-------	--

□ 회의결과

- 전문위원회는 FAO/IMO의 두 번째 합동작

업반 회의가 어선 선원 및 선박과 관련한 IMO 협약(93 SFV-P(토레몰리노스 의정서) 등)을 강제화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면서, “IMO/FAO 제2차 합동작업반 회의”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덴마크, 라이베리아, 노르웨이, 대한민국 및 터키가 IMO 대표단으로 참석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 또한, 동 의제 아래에서 벨리제는 어선에 대한 IUU 데이터를 IMO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의장은 IMO/FAO 제2차 합동작업반 회의결과를 토대로 FSI 16차시 논의할 예정임을 알림

* IUU Fishing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의제 16	2008년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

- Mrs. T. Krilic(Croatia)을 의장으로 재 선출하고, 부의장으로 Capt. G. Rangel (Venezuela)를 선출함

IV. 대표단 활동사항 및 후속조치

- 대표단은 회의록에 List of Person's Met을 포함시킴으로써 각 회원국의 관련 업무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이후 업무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락처 등 목록을 작성함
- 특히, PSC와 관련하여 한국·중국·일본·러시아 항만국통제 대표단과 6.7일사전 대표단 회의를 갖고 각 국의 항만국통제

- 관 교육시스템, 위험수당, Extra payment 지급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함
- 주변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항만국통제관 위험수당의 지급 및 항만국통제관과 기국 통제관의 경력에 따른 자격 범위 선정 등을 검토 필요
- 터키에서 제출한 의제문서(15/3/3)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본회의장 논의에 앞서 주변국과 사전 접촉을 통한 상호협력을 유도함
- 동 건 관련 초안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통신작업반의 작업 범위 선정에 기여하고 통신작업반 구성시 참여를 통하여 FSI 16차 회의에 대비할 필요
 - ※ 동 사안은 향후 아국의 선박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통신작업반에 적극 참여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 필요
- 대표단 전원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아국에서 최초 제안한 강제협약이행코드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Assembly Resolution 초안을 완성함으로써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원활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함
- AIS와 관련하여 SOLAS 개정 제안 문서를 MSC 83차에 제출토록 요청받는 등 IMO A 그룹 이사국 및 해운조선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회의였던 것으로 사료됨
- 아국 대표단은 FSI 회의에서 아국의 제안을 원활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회의 관련 의제의 본회의 논의에 앞서 각국 대표단과 사전 접촉을 통하여 아국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본회의장에서의 아국 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또한, 본국에서 사전대책회의 시에 각 회의 의제별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압축한 훈령(안)과 함께 IMO 사무국으로부터 개략적인 회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아국 대응방안을 설정한다면 더욱 전략적이고 원활한 IMO 회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